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684

발의연월일: 2022. 5. 23.

발 의 자:신현영·고민정·김병기

김병욱 · 김정호 · 오영환

유정주 • 전혜숙 • 최종윤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여 분만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두고 있음.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음.

이와 관련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 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 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참고로,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 1,061개소 대비 36개소가 증가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해 88.7%로 전체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3.6%인 소아청소년과 다음으로 높았음.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수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되하게 함으로써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 나. 환자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46조

제3항).

법률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조물책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햀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 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 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 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 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개 정 아

- ① (현행과 같음)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

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조 물책임법 등 다른 법률에 따 라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 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 우에는 그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 을 면한다.

<삭 제>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 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 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 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 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u></u> 보
<u> 상의 범위</u>